##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김원이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2

발의연월일: 2024. 6. 21.

발 의 자:김원이・남인순・서미화

신정훈 • 박지원 • 문금주

이정문 · 서삼석 · 허 영

정준호 · 김병기 · 장종태

이수진 · 소병훈 · 서영석

백혜련 • 김 유 • 김남희

강선우 • 전진숙 • 박희승

의원(21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부는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돼온 의대정원을 202 5학년도부터 4,610명으로 대폭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했음.

그러나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도 비수도권 및 의료취약지에 근무하지 않으면 지역 간 의료격차를 해소할 수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됨.

현재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수는 OECD 평균 3.7명인데 우리나라는 2.6명에 불과하며, 지역별로는 서울 3.2명, 광주 2.6명, 부산 2.4명등 광역시는 평균치를 상회하지만 전남은 1.7명에 불과함. 지방의 의사인력 부족은 매우 심각한 상황임.

실제로 전국 지방의료원 35곳의 의사 결원율은 지난 2018년 7.6%에서 2022년 14.5%로 2배 가까이 증가하였음. 의료취약지 공공병원은 수도권 대비 높은 임금을 제시해도 심각한 의사채용난을 겪어 필수의료분야 진료과를 수년간 휴진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에서 의무 복무할 것을 전제로 의대 신입생을 선발하는 지역의사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음.

2022년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김원이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0%가지역의사제에 찬성하였음.

이에 지역의사선발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여 교육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의료취약지 등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의 보건의료전문가를 양성하고, 지역의료의 질을 향상시키려는 것임.

##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 등에서 근무할 의사를 양성하고 그 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간 의료인력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의료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지역"이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중 의료인력이 부족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2. "지역의사"란 제7조에 따라 특정 지역 내에서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말한다.
  - 3. "지역의사선발전형"이란 지역의사가 되기를 원하는 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대학의 장이 실시하는 대학 입학 전형을 말한다.
-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지역의사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 ② 지역의사 양성을 위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
- 제4조(지역의사선발전형) ① 의학·치의학·한의학에 해당하는 교육과

정을 운영하는 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 제34조에 따라 해당교육과정에 입학할 학생을 선발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따라 일정 비율을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당 대학의 의과대학이 소재한 시·도 지역의 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한 자(졸업예정자를 포함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선발하여야 한다. ② 지역의사선발전형은 시·도별 의료취약지(「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12조에 따른 의료취약지를 말한다)의 분포, 의료기관의 수

③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에 대하여는 공공의료 관련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정을 추가로 이수하게 할 수 있다.

및 부족한 의료인력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 ④ 그 밖에 지역의사선발전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조(장학금 지원) 국가는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에 대하여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제6조(장학금 지원 중단 및 반환 등) ①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 받은 사람이 휴학하거나 유급되는 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장학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 ②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장학금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반환금"이라 한다)를 반환하여야 한다.
- 1. 퇴학 또는 자퇴한 사람
- 2.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에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 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한 사람
- 3.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 허가 취소된 사람
- 4.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질병,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④ 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 ⑤ 반환금의 반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의무복무) ① 제5조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받은 사람이 「의료법」 제5조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지역의사선발전형에서 공고한 시·도 내에서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기관·시설(이하 "의무복무기관"이라 한다)에서 10년간 복무(이하 "의무복무"라 한다)하여야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1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의무복무기관에서 의무복무를 할 것을

면허의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무복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때부터 남은 기 간 동안 의무복무를 하여야 한다.
- 1. 질병 또는 심신의 장애
-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마치기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 3. 「의료법」 제66조에 따라 그 면허자격이 정지된 경우
- 4. 그 밖에 일신상의 사유로 인한 휴직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제8조(전공의 수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 내 보건의료수요 등을 고려하여 지역의사가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을 취 득하기 위하여 선택할 수 있는 수런전문과목의 종류를 정할 수 있 다.
  - ② 지역의사가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를 하여야 하는 지역 내에서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수련전문과목을 선택하여 전공의 수련을 하는 경우에는 수련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다.
- 제9조(의무복무기관 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시·도지사와 협의를 거쳐 매년 지역의사 명단 및 배치기준을 결정하여 이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

- 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할 수 있다.
-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으면 의무복무기관을 지정하여 지역의사를 배치하고, 해당 지역의사 및 근무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의무복무기관의 지정및 지역의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배치된 지역의사에 대한 보수의 지급은 해당 의무복무기관의 보수규정에 따른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역의사 배치의 시기,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의무복무지역의 변경 등) ① 제9조에 따라 배치된 지역의사가 부득이한 사유로 의무복무지역 또는 의무복무기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무복무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 와 협의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다른 시·도의 기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 ③ 시·도지사는 감염병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의료인력이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역의사를 해당 시·도 내의 다른 기

- 관·시설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이를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복무지역·의무복무기 관 변경 및 파견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한다.
- 제11조(지역의사의 겸직금지) 지역의사는 제7조1항에 따른 의무복무를 완료하기 전까지는 의무복무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다. 다만, 제8조제2항에 따른 전공의 수련을 위하여 근무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제12조(의무복무 실태 보고 등) ①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지역의사의 근무실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에 게 보고하여야 하며, 관할 시·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지역의사는 제7조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없어졌을 때에는 보건복지부렁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의무복무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시·도지사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지역의사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행정기관에서 복무하고 있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절차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13조(시정명령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지역의사 선발, 양성, 관리,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대학의 장이나 의료기관의

장 또는 지역의사가 이 법에 따른 사항을 위반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 제14조(지역의사 등에 대한 지원)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에 대한 사명감을 부여하고 지속적인 근무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의사에 대하여 직무교육 제공, 경력개발 지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의무복무기관의 장은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종료된 지역의사를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할 수 있고,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등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 제15조(면허취소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7조를 위반하여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사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의사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 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의무복무 잔여기간 이내에는 「의료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의사 면허의 재교부를 받을 수 없다.
  -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의사가 제13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면허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